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5.20.(금) 조간 2022.5.19.(목) 11:00	배포 일시	2022. 5. 19.(목) 06:00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담당자	서기관 방종화 (044-200-5853)

철저한 사전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태풍피해 최소화 한다

- 해수부, 2022년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기상청에서는 올해 여름에도 대기 불안정과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9월 이후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을 태풍도 증가하는 추세*로 해양수산 분야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높다.

* 가을태풍 발생 빈도(연평균) : (1987~2011) 0.7건 → (2012~2016) 1.0건 → (2017~2021) 1.6건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어 예정이다. 태풍이동 상황을 감안해 태풍 위치에 따라 단계별 비상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어항과 항만, 수산 양식시설, 항로표지시설 등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선원 등 해양수산 분야 인명 피해 예방대책도 시행한다.

우선, 태풍 발생단계부터 진행경로를 관찰해, 태풍의 이동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여 대비·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과 어항의 정박시설, 크레인, 원목 야적장 등 1,644개 핵심시설, 109개 대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 그리고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민관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양식장 고정설비(돛, 부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대피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한다.

* 단계별 비상대응조직 운영 계획 : (북위 22도, 대만남단) 비상대비반 → (북위 25도, 대만북단) 비상대책반 → (북위 28도, 오키나와 북단) 비상대책본부

또한, 태풍 내습 시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적기에 개최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태풍특보 발효 시부터 매 4시간 간격으로 어선 위치보고 등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민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해양수산부 태풍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 단계별 비상근무체계 확립

- (본부) 북상 태풍 이동경로에 따라 비상대응조직 단계별 편성·운영(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와 연계)

구분	비상대비반 (반장:해사안전국장)	⇒	비상대책반 (반장:기획조정실장)	⇒	비상대책본부 (본부장:장관님)
운영기점	북위 22도 (대만 남단)	⇒	북위 25도 (대만 북단)	⇒	북위 28도 (오키나와 북단)
근무편성	해사안전국	⇒	5개 실시반, 1팀 (각 실국)	⇒	5개 실시반, 1팀 (각 실국)
주요임무	·비상근무태세 점검 ·비상연락체계 유지 ·매뉴얼 등 행동요령 정비		·상황판단회의 개최 ·어선대피 등 운영점검 ·소관시설 점검 관리		·상황점검회의 개최 ·항만폐쇄 등 운영점검 ·취약시설 점검 관리

- (소속기관) 태풍 경로·영향권에 따라 대비1단계, 대비2단계, 대비3단계, 대응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근무인원 확대 및 대비태세 강화

* 해경의 사고 규모에 따른 단계별 수습체계(대비→대응1→대응2→대응3)를 벤치마킹하되 태풍 내습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 선박대피 등 사전대비 중점 실시

구분	대비1단계	⇒	대비2단계	⇒	대비3단계	⇒	대응단계
운영기점	북위 22도	⇒	북위 25도	⇒	북위 28도	⇒	태풍 내습 시
근무편성	총괄부서	⇒	태풍 각 실시반	⇒	태풍 각 실시반	⇒	태풍 각 실시반 및 전 직원 비상대기
주요임무	·비상근무체계 점검 ·재난관리자원 점검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소관시설 현장점검 ·항만 비상운영 준비 ·재박선박 상황관리		·취약시설 집중점검 ·항만 비상운영 가동 ·선박대피협의회 개최		·피해상황 조사·보고 ·응급복구대책 시행 ·유관기관 지원요청

* 소속기관 상황 및 태풍 경로·영향권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편성 가능

참고 2

해양수산분야 태풍대비 핵심 및 취약시설 안전관리

□ 항만·어항, 수산 증·양식 시설 등 안전점검

- (시설점검) 항만·어항*, 여객터미널 등 자체 시설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즉시시정, 보수·보강 등) 철저(본부, 지방청 등)
 - * 중점관리시설 1,644개소 (항만 653개소, 어항 991개소)
- (증·양식 시설) 양식장 고박설비(돛, 부표) 점검, 이동가능 시설물 안전지대 대피, 필요시 양식물 조기출하 등 실시(지방청, 지자체, 수협 등)
 - 산사태 대비 육상낙시터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 유지
- (안전관리 상시화) 태풍 대비 하역장비 이동·고박, 야적장 관리실태, 위험물 하역시설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상시 점검(지방청 등)

□ 부두·방파제 등 해안가 안전관리

- (인명사고 예방) 국가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 국가어항 내 방파제 등 위험구역* 안전표지판 설치, 구명설비 비치 등 안전관리 강화(지방청, 항만공사, 어촌어항협회 등)
 - * △ 풍랑, 강풍, 너울성파도 등 자연현상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낚시객, 관광객 등의 출입이 많은 해안가 중 방파제, △ 어촌·어항법에 근거한 어항과 해안가 선착장, 월파로 침수가 우려되는 해안도로 등

□ 가거도 방파제 등 공사현장 안전점검

- (공사장 점검) 재난발생 시 공사현장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방자재 확보 실태, 수해 대비교육 등 풍수해 자연재난 대비 관리실태 점검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중앙합동점검시 우리부 소관 건설공사장 점검 및 항만·어항·여객터미널 등 자체 안전관리 점검(3~4월) 실시(지방청)

□ 선박 안전조업 및 안전운항 홍보

- (어선) 기상특보 등 재난관련 정보를 SSB, VHF를 통해 방송* 및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푸쉬 알림**을 활용하여 신속 전파(우리부, 수협)
 - * 기상특보 발효시는 매시간 방송 / ** 조업정보알리미 앱을 통한 알림서비스
- (여객선) 11개 운항관리센터를 통한 선장 등 운항관계자 대면 고지 및 네이버 밴드(1만여명)를 통한 재난관련 정보 공유(해양교통안전공단)

참고 3	관련 사진
-------------	--------------



어항내 선박피항



크레인 점검



원목부두 점검



선박계류 상태 점검